

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 제2항중 “부지사” 를 “행정부지사”로,

제10조 제2항중 “문화예술과장” 을 “문화체육과장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